

# 고향사랑 기부제가

## 2023.1.1.부터 시행됩니다.

**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 
감사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.**

-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, 시도, 시군구에 **연간 500만원** 한도 내로 기부 가능
- **세액공제 혜택**  
(10만원까지는 전액, 초과액은 16.5% 세액공제)
- **답례품 제공**(기부금의 30% 내 지역특산물 등)

♪ **‘고향사랑 기부금’으로 농업·농촌을  
두 번 응원해 주세요! ♪**

**한 번은 농촌지역 기부로,  
또 한 번은 농·축산물 답례품 선택으로~**

